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7
----------	-----

제출일자 : 2008. 10. 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안 제4조)
-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안 제5조)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안 제7조)
-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안 제8조)
- 하역주차구획의 지정(안 제12조)
- 주거지 전용주차 구획 설치 등(안 제13조)

3.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08. 8. 20 ~ 9. 9 ▷ 제출된 의견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시장 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 3개 구역 이내로 하며 지역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제1항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안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주차장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장 이용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공영주차장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5항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를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주차장 표시)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이 조례 제13조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시는 별표 1 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② 제1항의 주차장 표시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 등)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 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2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설치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③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시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받는다.

④ 제2항에 따른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따른다.

⑤ 주거지전용 주차장 등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

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6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한다.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구청장은 영 제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 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8조(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비용 보조)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 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4.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완료시 지급하되, 지급 기준은 구청장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9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표 6과 같다.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터 20일 이 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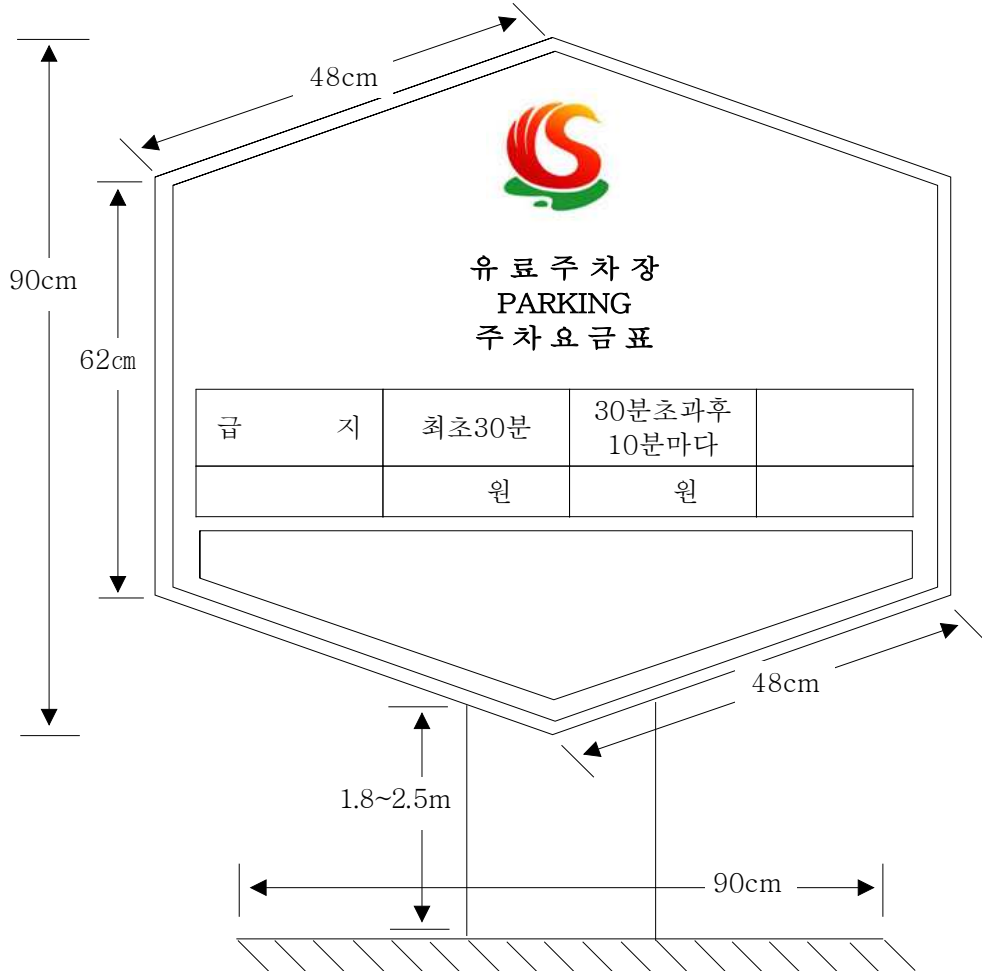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노상주차장 표지판(제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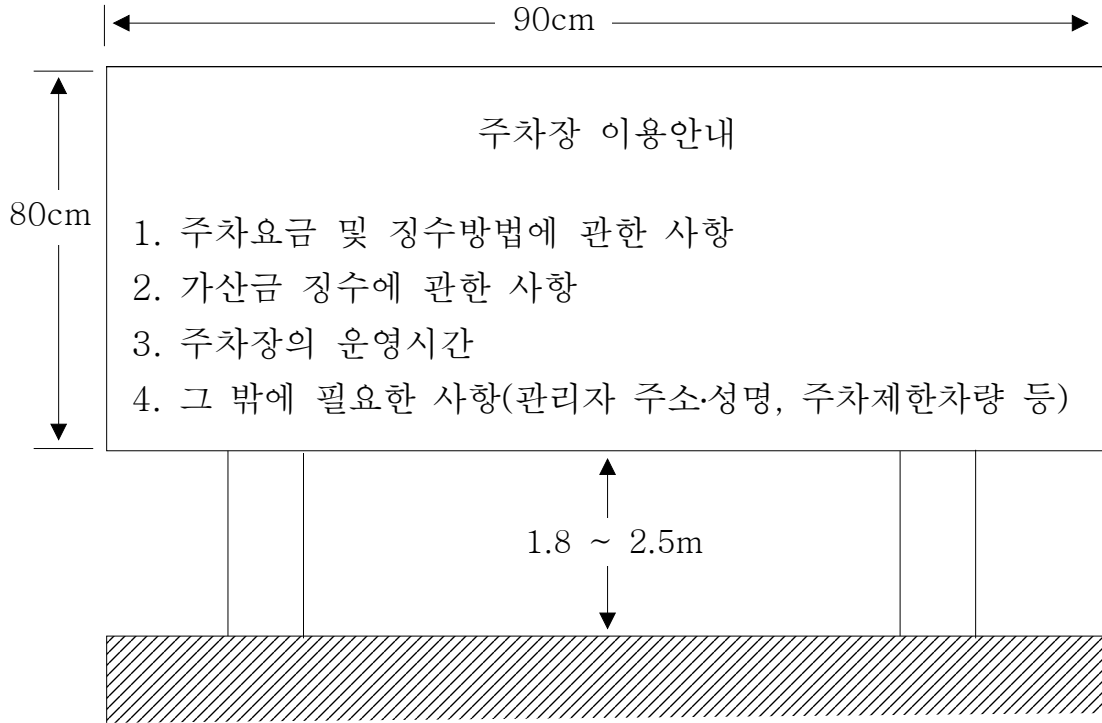


비 고

재 료	색		채	
	바 탕	시기표시	영 문	그 밖의 글씨(고딕)
알루미늄판	미 색	초록색	적 색	청 색

[별표 2]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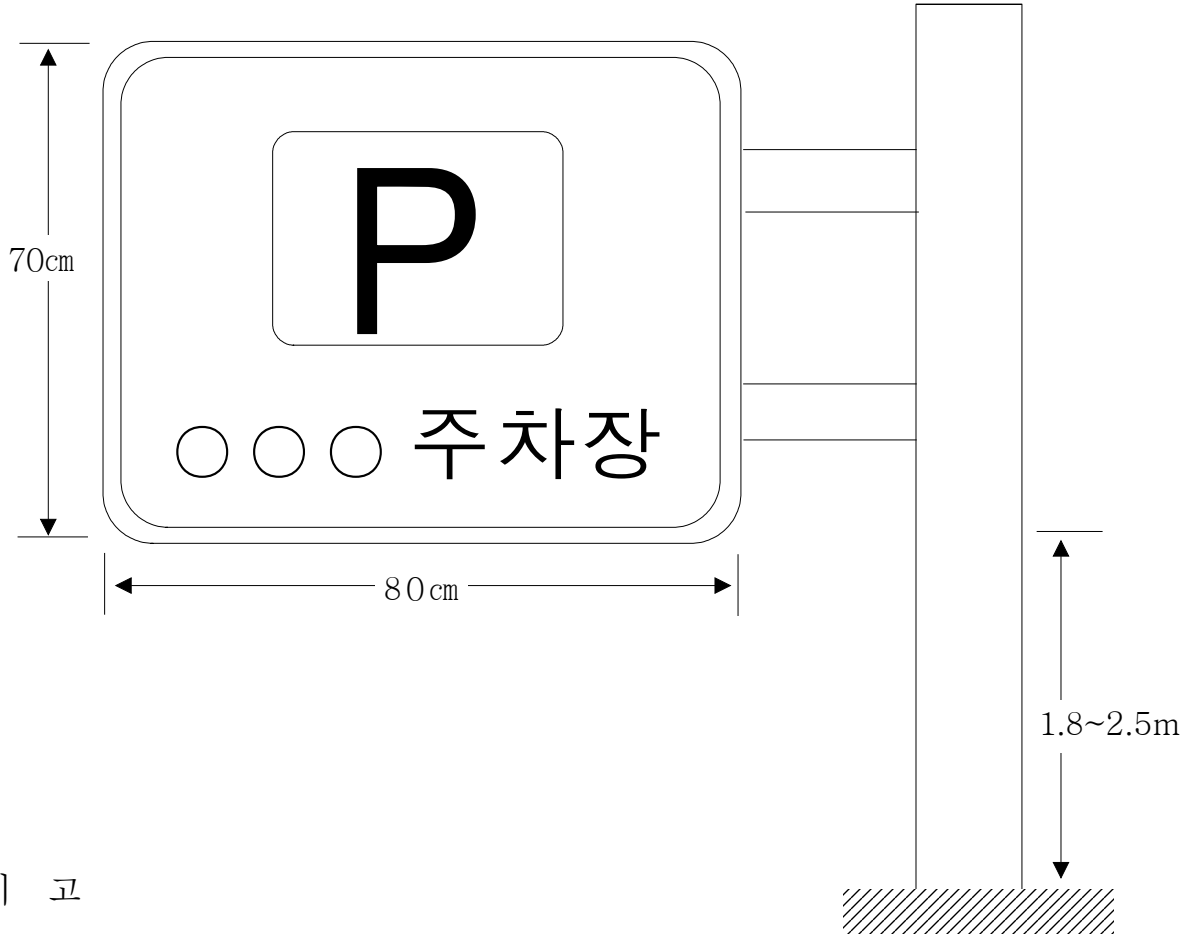
비 고

구분	재료	색채	
		바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루미늄판	녹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녹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허용오차는 도로표지판 규격에 준함

[별표 3]

노외주차장 표지판(제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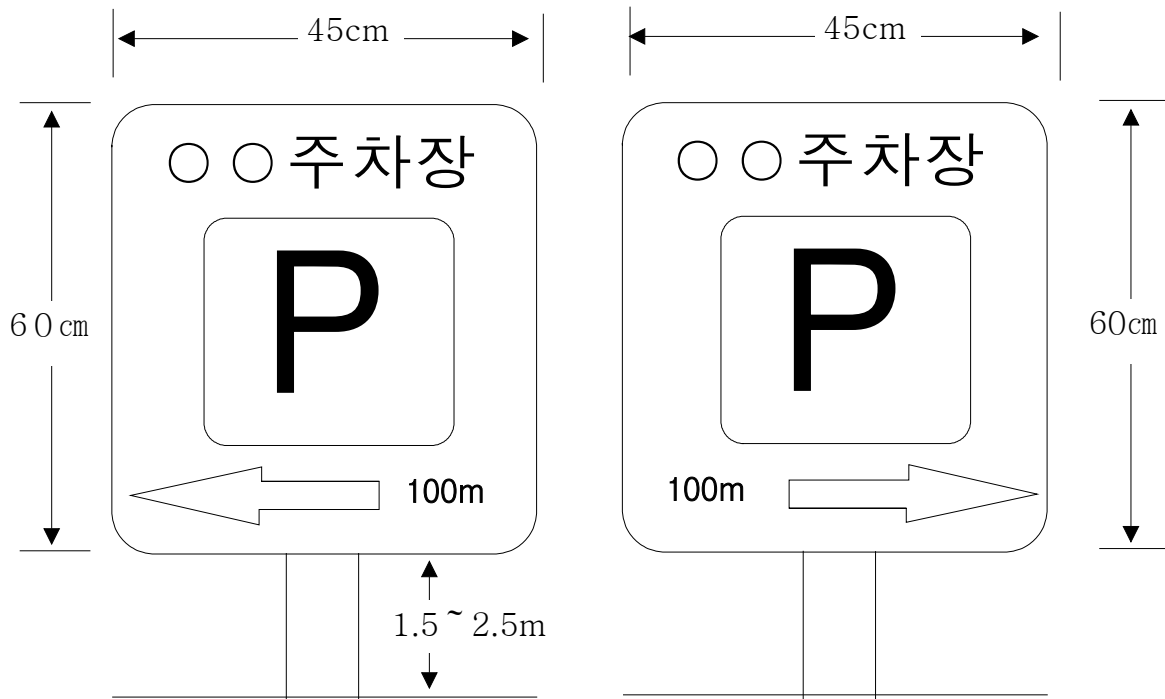


비 고

- 재 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45cm×세로 40cm)
- 외부표지판(가로 80cm×세로 70cm)
- 주차장표지판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주차장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하여야 함.

[별표 4]

노외주차위치 안내표시(제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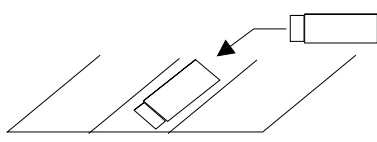
비 고

- 재 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규격(내부표지판) 가로 35cm × 세로 35cm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 청색
문자 및 기호: 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 흰색
문자 및 기호: 청색
- 설치위치: 노외주차장으로부터 3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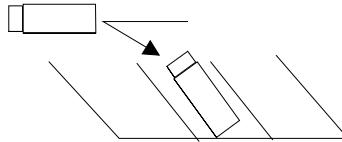
[별표 5]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제11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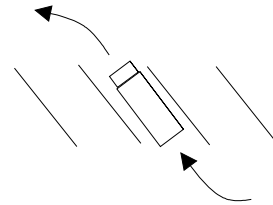
1. 주차형식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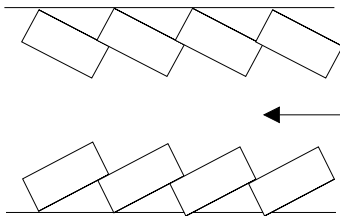
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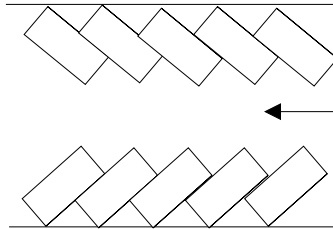
전진주차·전진발차

2.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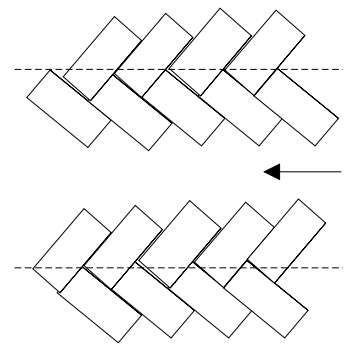
가. 3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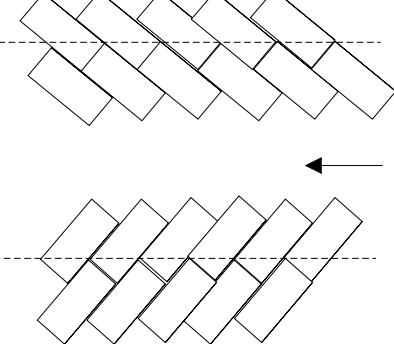
나. 45°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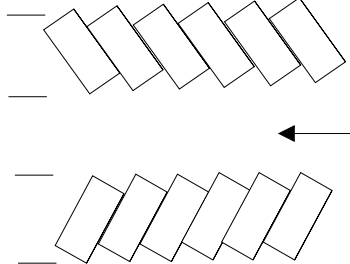
다. 45° 교차주차(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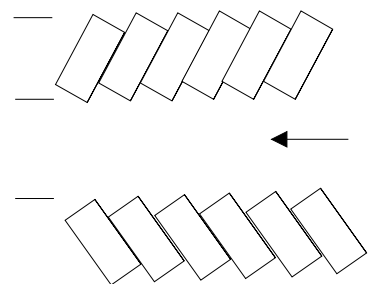
라. 45° 교차주차(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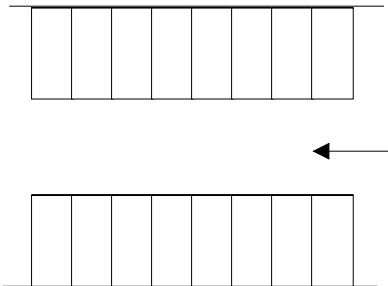
마. 6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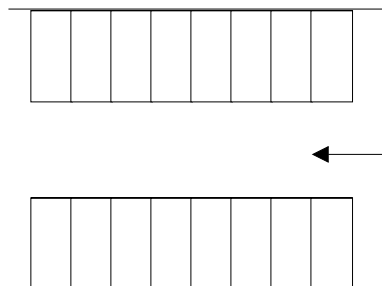
바. 60° 후진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진주차



[별표 6]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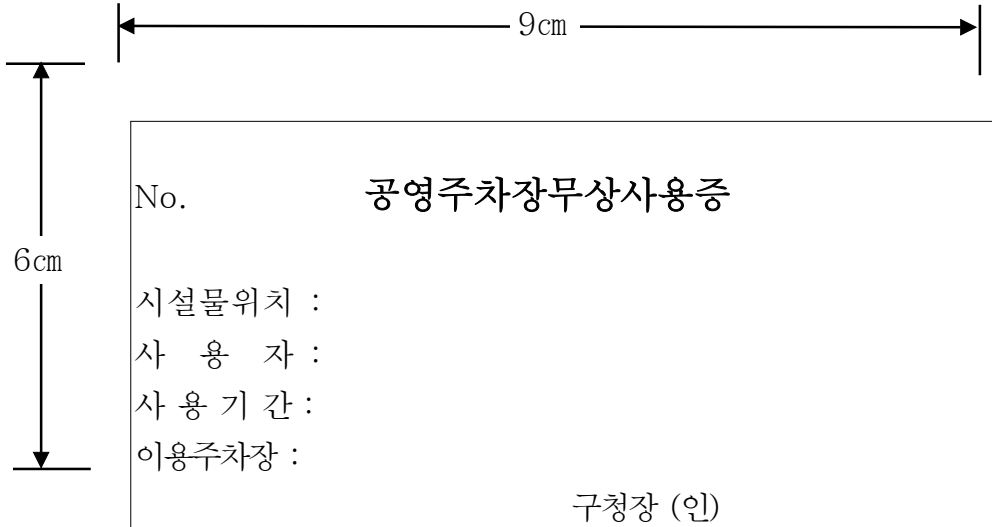
(금액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과징금 금액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	5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50

[별지 1]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제17조 관련)

(앞면)



- 비 고 -

- 바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

주의사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4. 이 주차장 사용증은 지정된 주차장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